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부서)의 장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3-21호
2023. 4. 21.(금)

차 례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80호) ····· 1

예 규(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예규 제18호) ····· 4

고 시(1)

- 도시계획시설(효심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고시 제2023-40호) ·· 16

공 고(3)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23-459호) ····· 20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462호) ·· 21
- 등록사항정정(경계) 대상 토지 공고(공고 제2023-473호) ····· 23

공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4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8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원칙으로 한다.”를 “원칙으로 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7일”을 “30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최초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연도에 단체협약에 따른 특별휴가 사용일수는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를 “ 장기재직휴가 일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규정한 재직기간별 휴가 일수에서 5일을 공제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7일”을 “10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7일”을 “30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공무직노동자 채용 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명시하여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장기재직휴가, 징계재심절차 등 2022년 공무직 노사 단체협약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직 채용 절차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명시함(제5조제1항).

나. 휴직 연장원 제출 시점을 변경함(제11조제2항).

- 휴직만료 7일 전 → 30일 전

다. 장기재직휴가 일수 공제 조항을 정비함(제23조제3항).

- 장기재직휴가 최초 사용시 특별휴가 사용 일수 공제 →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5일 공제

라. 징계 관련 재심신청기간 등을 변경함(제43조제1항 및 제2항).

- 징계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심신청 → 10일 이내
- 재심 요청 받은 경우 7일 이내 재심 회의 개최 → 30일 이내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4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규 제1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처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
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 포함) (이하“영상”이라 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써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
   라.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3.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음성의 녹음
   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4.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
5.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6.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

한다.

7.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 음성기록 및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8.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권익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등

제4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하"위법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녹화 또는 녹음를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전송 금지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5.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
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7조에 따른 입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반납

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영상·음성의 녹화·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2.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3.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로 실시간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

4. 휴대용 보호장비 및 관련 기기 운영·관리

제6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지정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다만, 휴대용 보호장비를 피탈당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무선 방식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2.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

3. 구에서 보급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운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제7조(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정): 사용부서 부서장, 동장

2.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부): 사용부서 주무팀장, 행정팀장

②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입·출고를 관리한다.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서 입·출고 내역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부)를 입출고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기기관리 및 보안 등

제8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 피탈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관리책임자만 접속

2. 무선으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

제10조(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용)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장비(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 포함)를 갖추어야 한다.

②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 고발 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 한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⑤ 각종 접속기록은 1년간 보관한다. 또한,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한다.

⑥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갱신하여야 한다.

⑦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장 기록물 관리 및 교육

제12조(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 처리 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

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내용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영상(음성)기록 증거물 관리 현황(제5조제5호 관련)

연번	관리번호	영상(음성)기록 관리					관리책임자		비고
		기록일시	기록장소	민원처리 담당자	삭제일	삭제자	부	정	
	2○○○-1								

[별지 제2호 서식]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입출고 현황 대장(제7조제2항 관련)

연번	일 자	일련 번호	사 용 자		용 도	출고 시각	담당자 확인	입고 시각	담당자 확인
			직 급	성 명					

[별지 제3호 서식]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등록대장(제8조제1항 관련)

연번	일련번호	모델명	제작회사	제작번호(S/N)	등록일	관리책임자		해지일	관리책임자		비고(해지사유 등)
						부	정		부	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22.7.12.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23.4.1.시행)에 따라 민원인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시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제1조부터 제3조)

나.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기기관리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기록물 관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3-40호

도시계획시설(효심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05-5번지(효심어린이공원)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효심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세부)는 대덕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2023년 4월 2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05-5번지 (효심어린이공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효심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사업의 명칭 : 효심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다. 사업 시행자
- 성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오정동)

라.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규 모 : 공원정비 및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1식 등
- 공원면적 : 1,507.3㎡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계				1,507.3	1,507.3	-	-	-	-	-
1	법동	205-5	공	1,507.3	1,507.3	대전 대덕구	-	-	-	-

사. 실시계획 총괄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건 축 규 모(㎡)				비고
	공원조성계획 결정면적	실시계획 신청		건축면적		연 면 적		
		면적	개소	결정면적	실시계획 신청 면적	결정면적	실시계획 신청 면적	
계	1,507.3	1,507.3	20	23.8	23.8	23.8	23.8	
시 설	651.0	651.0	20	23.8	23.8	23.8	23.8	
녹 지	856.3	856.3	-	-	-	-	-	

아. 실시계획 시설 세부조서

시설 구분	시설 번호	시 설 명	공원조성계획 시설별 결정면적 (㎡)	실시계획 신청면적 (㎡)	시설물 (개소)	건축물(㎡) 바닥면적 공원조성계획 결정면적	바닥면적 실시계획신청 면적	연면적 공원조성계획 결정면적	연면적 실시계획 신청면적	비 고
총계	–	–	1,507.3	1,507.3	20	23.8	23.8	23.8	23.8	
시설 면적	계	–	651.0	651.0	20	23.8	23.8	23.8	23.8	
도로 및 광장		소 계	420.0	420.0	–	–	–	–	–	
		도 로	267.0	267.0	–	–	–	–	–	
	1-1	광 장	153.0	153.0	–	–	–	–	–	
휴양 시설		소 계	35.0	35.0	1	–	–	–	–	
	2-1	퍼 걸 러	30.0	30.0	1	–	–	–	–	
	2-2	휴 게 시 설	5.0	5.0	–	–	–	–	–	
유희 시설		소 계	140.0	140.0	1	–	–	–	–	
	3-1	어 린 이 놀 이 터	140.0	140.0	–	–	–	–	–	
	3-가	조 합 놀 이 대	–	–	1	–	–	–	–	
운동 시설		소 계	31.0	31.0	2	–	–	–	–	
	4-1	체 력 단 련 장	31.0	31.0	–	–	–	–	–	
	4-가	체 력 단 련 시 설	–	–	2	–	–	–	–	
편익 시설		소 계	25.0	25.0	–	23.8	23.8	23.8	23.8	
	5-1	화 장 실	25.0	25.0	–	23.8	23.8	23.8	23.8	
관리 시설		소 계	–	–	16	–	–	–	–	
	6-가	공 원 등	–	–	5	–	–	–	–	
	6-나	경 관 조 명	–	–	6	–	–	–	–	
	6-다	C C T V	–	–	1	–	–	–	–	
	6-라	공 원 안 내 판	–	–	4	–	–	–	–	
녹지	소 계	–	–	–	–	–	–	–	–	
	–	녹 지	856.3	856.3	–	–	–	–	–	

자. 관계도면

1) 공원조성계획 총괄도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 2023-31호(2023. 0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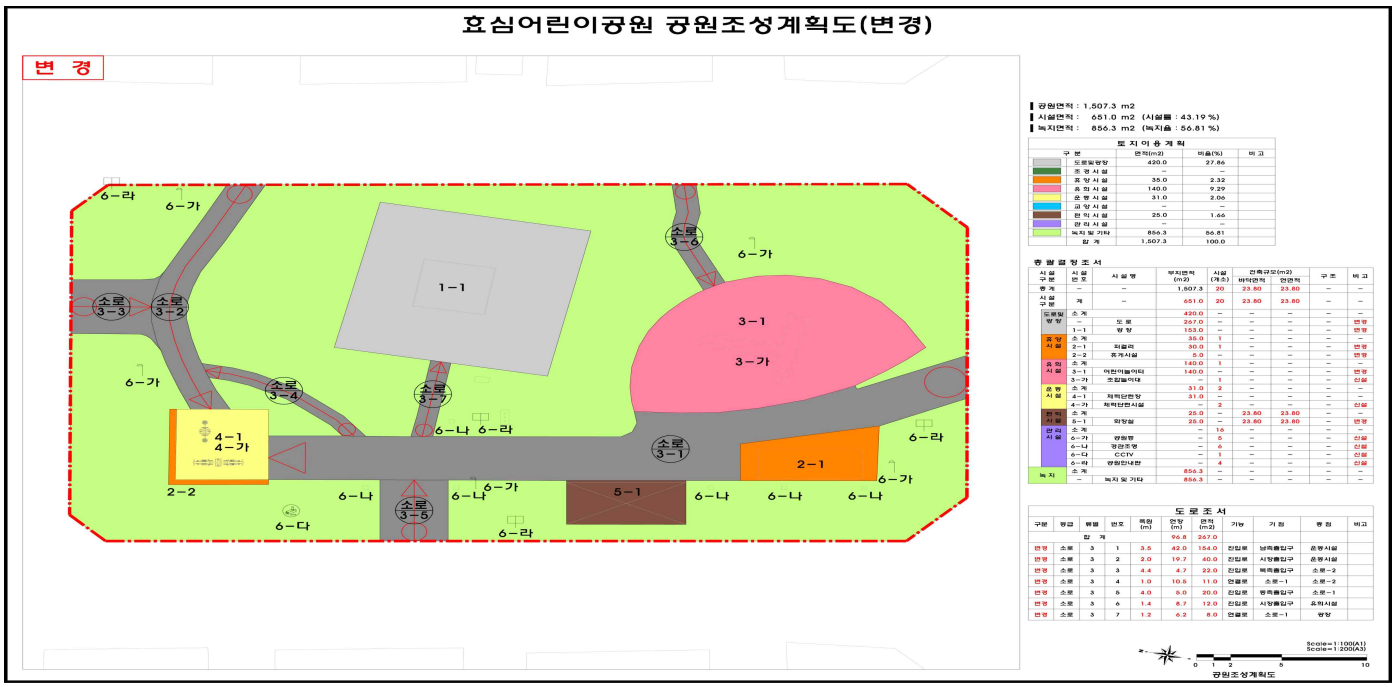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459호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현동 184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하는 사항

위 치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 의 여 부	비 고
이현동 184 번지	389㎡	6㎡	이정순 장우혁	동의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 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2)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462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제1항 및 제31조(과태료)제2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차량 소유자에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의견제출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4. 21. ~ 2023. 5. 6.(15일간)
3. 공고대상 / 3명

연번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내용	과태료(원)	반송사유
1	손*애	94라814*	충남 논산시 벌곡면 수락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폐문부재
2	호****** 협회	92어143*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폐문부재
3	황*만	80가293*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제원1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폐문부재

4. 공시송달내용

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환경과(☎042-608-686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환경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 042-608-6864)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473호

등록사항정정(경계) 대상 토지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에 따라 아래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하고, 정정할 사항이 정리되기 전까지 지적측량을 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대상 :"등록사항정정(경계,면적)대상토지"공고
2. 공고기간 : 2022. 04. 21. ~ 2022. 05. 05.(15일)
3.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소재 (대덕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통지(등록)내역	비고
			정정 전	정정 후			
이현동	97-1	전	843	843	정*갑	(80)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경계
신탄진동	89-1	대	73	73	박*범 외 2인	(80)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경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토지정책과(☏042-608-53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